

	<p>2. [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도1395 판결]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,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.</p> <p>에 명시되었듯이,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 자체만으로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"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는 돌대가리 개소리"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,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.</p> <p>이런 돌대가리가 경감이랍시고 수사한다니, 당장 해고해야 한다. 엄벌에 처하라</p> <p>자세한 것 ⇒ https://seokgung.com/eunpyung10/corrupt9x.htm#04022026</p>
첨부 파일	0522dhkim.pdf

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	대검찰청 (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)
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2605-1119282
접수일	2026-05-26 11:20:34
담당자(연락처)	길준영 (042-470-4562)
처리예정일	<p>2026-10-02 23:59:59</p> <p>※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. 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</p>

답변 내용

통지일	2026-06-12 11:23:06
처리결과(답변내용)	<p>대전지방검찰청</p> <p>김명호 님 귀하</p> <p>○ 안녕하십니까! 김명호 님</p> <p>○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 (민원번호:1AA-2605-1078297)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. 귀하의 민원 취지는 『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관으로서, 법령의 적용 요건을</p>

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처벌해 달라』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민원답변

- 대전지검 사건과 국민신문고 접수담당자 길준영 수사관입니다.

- 귀하의 민원은 우리 청 고소사건 2026형제19048호로 수리되었으며, 인권보호부 송새봄 검사실(042-470-4097)에 배당되었습니다. 해당 검사실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국민신문고 민원과 별도로 그 수사결과를 통지할 것입니다.

- 사건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위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이며, 국민신문고 접수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접수 담당자(042-470-4562, 수사관 길준영)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-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의 민원 또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※ 본 답변을 보신 후에,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만족도 조사에 참여(국민신문고 로그인-'나의 신문고'를 클릭-만족도 조사)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. '만족도 등록'은 사건처리 결과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.

아쉽게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담당수사관은 귀하께서 중요시하는 사건수사나 결과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하나, 그 외 민원 접수처리 과정, 답변 기타 형사법절차 진행에 있어 국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○ 민원 접수처리 및 답변에 대해 만족하신 경우 '만족' 평가 부탁드립니다.

※ 민원만족도 답변방법(예시)

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

위와 같이 해당 부분의 네모 칸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.

2026. 6. 12.

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

첨부 파일